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엠네스티대학생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대안교육연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법률공동체 두런두런,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서울특별시지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즐거운교육상상,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서울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흥사단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자료 1]

서울학생인권조례 주요 쟁점 사항 요약

□ 차별 금지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가장 논란이 되었던 조항이었으나,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주민발의안 원안이 그대로 통과됨
(성 소수자 인권단체 회원이 시의회에서 농성을 진행하였음)
- 이 조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차별 금지 사유를 그대로 가져온 것임. 또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성적 지향, 임신 또는 출산에 따른 아동에 대한 차별을 적극 시정할 것을 한국정부에 요구한 바 있음.
- 경기 : ‘임신 및 출산’, ‘성적 지향’ 문구 있음.
광주 : ‘임신 및 출산’ 문구 없고 ‘성적 지향’ 문구 있음.

□ 체벌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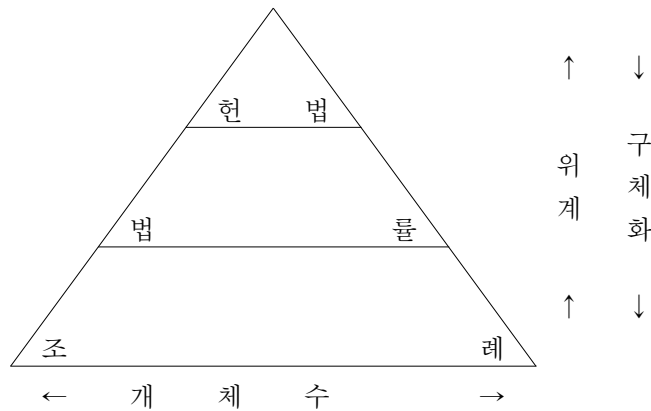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보수단체들은 간접체벌까지 금지한 것은 상위법 위반이라고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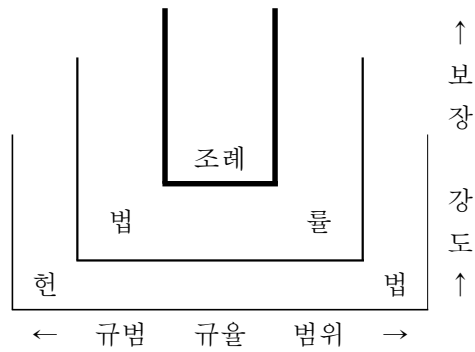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 8항은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이에 대해 직접 체벌은 금지되었으나 간접체벌은 허용되었다는 것이 보수단체들의 주장. 교과부도 ‘교육벌’이라는 이름으로 간접체벌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 그러나 체벌 전면 금지는 유엔에서 지속적으로 촉구해온 바임. 또한 학생인권조례가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상위법보다 낮은 기준을 규정하여 학생의 인권을 제한할 경우에만 상위법을 위반한다고 봐야 할 것임. 이와 관련해서 오동석 교수(아주대 헌법학)는 헌법과 법률, 학생인권조례의 관계를 아래와 같이 제시한 바 있음¹⁾.

<그림 1> 법규범 형식에 따른 위계도



<그림 2> 법규범 형식에 따른 인권보장의 강도



□ 두발 복장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1)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공청회 자료집」(2010년 1월 19일)에서 재인용.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 주민발의안 : 두발 복장 자율
 - 자문위원 : 두발 복장 자율, 교복 착용 여부만 학교 규칙으로 결정
 - 경기 : 두발 길이 자율, 나머지는 학교 규칙으로 제한 가능
 - 광주 : 두발 복장 자율, **교복 착용 여부만** 학교 규칙으로 결정
- 두발 자유는 학생인권의 가장 대표적 요구사항 가운데 하나였음. 현재 대부분의 서울 학교에서는 사실상 두발 규제가 풀려 있는 상황이지만 학생, 교사가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임에는 틀림없음. 두발 지도로 인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학생-교사 사이의 갈등을 없앨 수 있음.

□ 휴대폰 소지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19조에 따라 학생이 그 제정 및 개정에 참여한 학교규칙으로 학생의 전자기기의 사용 및 소지의 시간과 장소를 규제할 수 있다.”

- 경기, 광주, 서울 최종안 모두 유사함.

□ 종교 자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생에게 예배·법회 등 종교적 행사의 참여나 기도·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2.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강요하는 행위
- 학교의 장은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하여 이를 대체할 과목을 마련해야 한다.”

- 경기, 광주, 서울 최종안 모두 유사함. 교과부의 지침과도 유사함.
- 2004년 서울 대광고 강의석 학생의 단식 운동으로 학내 종교 자유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바 있음. 보수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반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종교 자유 조항이 ‘선교’까지 가로막는다는 왜곡 논리를 퍼뜨리고 있음.

□ 집회 자유 : 집회 자유는 서울에서 최초로 규정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 경기, 광주 : 집회 관련 조항 없음

○ 촛불집회 참여 등으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은 사례, 재단비리 문제 등으로 학생들이 교내 집회를 열었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것. 그러나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될 경우 서울에서 교내 집회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

[자료 2]

학생인권조례 쟁점 조항 비교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
<p>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고 정책을 수립할 경우 학생인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보장을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p> <p>④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⑤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⑥ 학생은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존중하여야 한다.</p>	<p>제4조(책무) ①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의 인권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④ 교육감과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는 학생의 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교육과정 및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정책에 협력하고 학생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③ 학생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생명과 인간의 존엄을 중시하며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p> <p>④ 보호자는 인권 교육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학생이 올바른 인권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와 협력하여야 한다.</p>

<p>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p> <p>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p>	<p>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p> <p>②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p>	<p>제20조(차별 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언어,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p> <p>②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p> <p>② 학생은 특정 집단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설하는 행위나 모욕,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p> <p>③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방지하여야 한다.</p>	<p>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p> <p>②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p> <p>③ 학교와 교육감은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학교폭력 및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p>	<p>제11조(신체의 자유) ① 학생은 존엄한 인격체로서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p> <p>② 학교에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등을 포함한 체벌은 금지된다.</p> <p>③ 학교에서는 교육적 목적의 활동을 제외한 강제노동은 금지된다.</p> <p>제19조(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p> <p>③ 학생은 폭행,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에서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p>
<p>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p>	<p>제11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p>	<p>제14조(표현의 자유) ② 학생은 두발, 복장 등 자신의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교복은 제15조제3</p>

<p>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p>	<p>②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정당한 사유와 제18조의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는 학교의 규정으로써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p>	<p>항의 절차에 따라 학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p>
<p>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생에게 예배·법회 등 종교적 행사의 참여나 기도·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2.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강요하는 행위 3. 종교과목의 대체과목에 대하여 과제물의 부과나 시험을 실시하여 대체과목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4.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차별행위 5. 학생의 종교 선전을 제한하는 행위 6.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7. 종교와 무관한 과목 시간 중 특정 종교를 반복적, 장시간 언급하는 행위</p>	<p>제15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업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3조(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p>

<p>④ 학교의 장은 교직원이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p> <p>⑤ 학교의 장은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하여 이를 대체할 과목을 마련해야 한다.</p>		
<p>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p> <p>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p> <p>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p> <p>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다만,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6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p> <p>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4조(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p> <p>(② 두발, 복장 관련 조항)</p> <p>③ 학생은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p> <p>④ 학교는 인터넷 및 인쇄 매체를 통한 학생들의 언론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